

실태조사 기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의 입법 개선 방안¹⁾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hongsj@ricon.re.kr)

- I. 서 론
- II.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개요
- III.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 IV.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 V. 결 론

2

I. 서 론

1995년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고, 업종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권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을 약 98.1%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실제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과 괴리가 있다.

한편, 2013년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실무에서는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각서 등을 통하여 부당특약 설정이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그 효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부당특약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1) 본 연구는 홍성진·박선구(202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RICON FOCUS 제9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II.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개요

따라서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급사업자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1)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및 업종 특성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시의 편의를 제공 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1995. 1. 5.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는 2022년 현재 건설업종·조선업종·자동차업종 등 약 50개의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사용·권장하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기반으로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서 규정할 수 있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 법적 효력

2022년 현재 다수의 법제에서는 계약당사자의 공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법제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표준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이 있다.

반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법제로는 “하도급법”상 표준하도급계약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표준가맹계약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표준계약서 등이 있다.

표 1 표준계약서 관련 법제 및 효력

	법 제	내 용	위반시 제재
강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표준계약서	• 없음
	민간임대주택법	표준임대차계약서	• 1,000만원 과태료
	외국인고용법	표준근로계약서	• 500만원 과태료
권장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	• 없음
	가맹사업법	표준가맹계약서	• 없음
	상가임대차법	표준계약서	• 없음

2. 부당특약 주요 내용

(1) 부당특약 의의

부당특약은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거나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계약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말한다.

2013. 8. 13.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신설한 이후 2022년 현재 법률과 시행령 외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중층적 법규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방지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하도급계약의 형태, 공사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2) 부당특약 법적 효력

오늘날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효력과 제재 정도가 상이하다.

부당특약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제로는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반면, 부당특약의 효력을 유효화하고 있는 법제로는 “하도급법”, “지방계약법”이 있다.

표 2 부당특약 관련 법제 및 효력

구분	법제	내용	위반시 제재
무효	국가계약법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 제3항) •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법 제5조 제4항)	• 없음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제22조 제5항)	• 없음
유효	하도급법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조의4)	• 시정조치 •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 등
	지방계약법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1항)	• 없음

3.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 관계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권장사항에 불과하고, 상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특약은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합의서, 각서 등을 통하여 설정된다.²⁾

2) 홍성진(2020),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2020-0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면.

III.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은 표리(表裏)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한다.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약 10,000개의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83,792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비율은 건설업종이 약 98.1%로 나타나고 있다. 부당특약 설정 비율은 조사되지 않고 있다.⁴⁾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서 실제 수급사업자가 체감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비율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당특약 설정 비율은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업종에서 수급사업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설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1. 실태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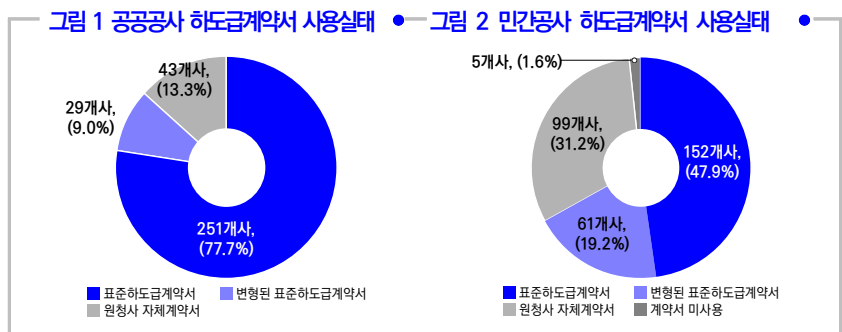
’22년 9월 5일~16일(약 2주간)까지 대한전문건설협회 시·도회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총 328개 전문건설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건설업종별의 경우 철근콘크리트(52개사), 금속창호온실(45개사), 실내건축(36개사), 상하수도(36개사), 토공(26개사), 도장(26개사), 습식방수(25개사)등이며, 지역의 경우 수도권 102개사, 지방 226개사가 참여하였다.

3)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부당특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은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의 유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부당특약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 12. 16),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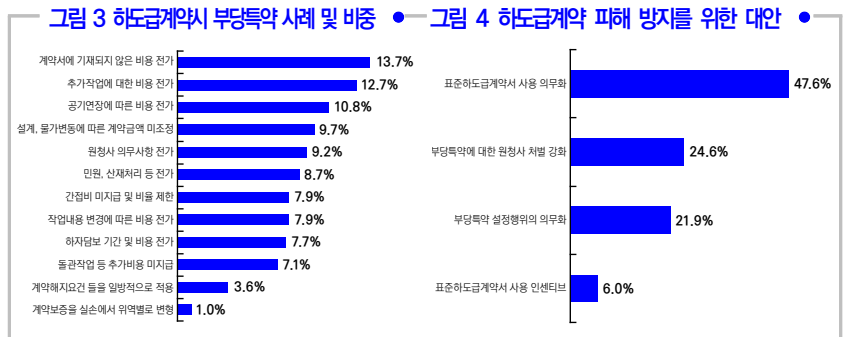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공공공사는 77.7%, 민간공사는 47.9%로 조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2021.12.16) 98.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50% 미만으로 원청사의 자체계약서 사용이 31.2%에 이르고 있으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형하는 경우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당특약은 하도급계약서 사용 형태에 따라 설정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에서의 부당특약 설정비율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44.8%이나, 변형된 계약서 또는 원청사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73.6%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공사 역시 부당특약 비율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52.6%인데 비해, 타 계약서는 66.1%로 높은 상황이다.

부당특약의 유형으로는 공공공사의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 전가”가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추가작업에 대한 비용 전가”,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 미지급”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는 조금 다르게 “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미조정”, “민원 및 산재처리 전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47.6%)”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부당특약에 대한 처벌강화(24.6%)”, “부당특약 설정행위의 무효화(21.9%)”,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6.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시사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을 통하여 부당특약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부당특약 설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부당특약이 설정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제재 등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적인 피해구제와는 무관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조사 결과 부당특약 규정 도입 이후 건설업종의 부당특약에 따른 행정제재는 약 49건에 불과하다.

또한, 부당특약 설정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구제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계약 제9조 및 제10조가 하도급법 제3조의4를 위반한 부당한 특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가 위 제9조에 근거하여 반소 청구 인용판결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제9조 및 제10조가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하도급법은 제3조의4에 위반된 부당한 특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위 조항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조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조항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가합544869 판결)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도모를 위해서는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

IV.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개선을 위한 입법 방안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의 법적 쟁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하여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서로 다른 논리로 찬반 입장을 펼치고 있는데, 핵심은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 여부이다.

표 3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찬반 논리

구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부당특약 무효화
찬성	공정한 계약을 위한 경제적 규제가 가능하고 정당한 특수조건을 통하여 현장의 특성 반영 가능	“국가계약법” 등 유사 입법례가 존재하고 민사소송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이익 침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
반대	사적 자치의 원칙 침해와 현장의 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사적 자치의 원칙 침해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른 민사상 효력의 존부를 좌우하는 문제 발생

그러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현대 민법상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로 수정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공정거래를 위한 경제적 규제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적 입법을 통하여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도급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도모하기 위한 공법(公法)이라고 할 것이다.

하도급거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사법의 원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 당사자간에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대등관계가 아닌 종속관계가 형성되고 원사업자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행위는…이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실패현상을 치유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1984년 12월 31일 법률 제3779호로 하도급법이 제정되어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자 2001헌바98 결정).

특히, 공공계약은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인(私人)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비용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단

순히 사적 자치의 원칙이 아닌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19. 11. 26. “국가계약법”은 부당특약을 무효로 하도록 개정된 것이다.

공공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하도급대금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제21대 국회에서도 ‘공공계약 가운데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이다.⁵⁾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입법안

공공계약은 하도급 분야라고 하더라도 자원 구조가 세금이고, 공사비용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공계약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도모하고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가 필요하다.

이 경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계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과의 원도급계약과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는 정당한 특수조건은 설정이 가능하다.

셋째, 부당특약 무효화는 특수조건 등에서 설정된 부당특약을 무효화 시키는 법적 근거이다.

이를 토대로 공공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 관련 “하도급법”입법안은 다음과 같다.

5) 제21대 국회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이 가운데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공분야 건설위탁의 경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고, 송재호 의원과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은 부당특약이 설정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는 법안이다.

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생략) 〈신설〉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③ ~ ⑧ (현행 제2항부터 제7항까지 같음)
② ~ ⑦ (생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 ----- ----- . 이 경우 제3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제조 등의 위탁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생략) 〈신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권장사항에 불과하고, 상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특약은 변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의 자체 계약서, 현장설명서·합의서·각서 등의 특수조건을 통하여 설정된다. 즉,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부당특약은 표리(表裏)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실태조사 결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을 통하여 부당특약을 예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도모를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부당특약 무효화를 동시에 규율할 필요가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와 대기업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 여부’ 등의 논리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현대 민법상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 금지로 수정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은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선언하면서도 공정거래를 위한 경제적 규제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적 입법을 통하여 규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공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고 하도급대금 역시 세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공정한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하도급법”상 공공계약에 대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부당특약 무효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공공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도모하고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홍성진·박선구(202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조사를 통한 입법 개선 방안”, RICO N FOCUS 제9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 홍성진(2020), “하도급 부당특약 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 연구”, 건설정책리뷰 2020-07, 대한건설정책연구원
3.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1. 12. 16),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